

# 한-미 FTA 화학공업과 연관공업의 생산품에 관한 특례 규칙 품목별 원산지기준 제6부 해설(Ⅱ)

오수교 전문위원 국제원산지정보원



## 시작하면서

기업이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협정에서 정한 관련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미 FTA협정문의 부속서 6-가의 품목별원산지기준 HS 품목분류표 제6부(화학공업과 연관공업의 생산품)에 관한 특례규칙과 같은 일부 규정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대표적 규칙이다. 그러나 이 규칙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에 본고에서 지난호에 이어 규칙2 부터 규칙7까지 소개한다.

**규칙 2 정제(purification)**

정제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정제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뤄지고 다음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 가. 불순물을 80퍼센트 이상 제거된 경우, 또는
-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
  - (1) 의약품, 의료용, 화장용품, 수의학 또는 식용 물질
  -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 (4) 특수광학용
  - (5) 건강과 안정을 위한 무독성용
  - (6) 생명공학용
  -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 (8) 핵등급용

정제란 원소와 화합물(제28류와 제29류) 또는 특정한 화학조제품(제30류 내지 제38류)에 존재하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도<sup>1)</sup>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품목분류의 관점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28류나 제29류에서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이 분류되지만 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순물이 함유되었더라도 품목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것에는 다음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 ①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
- ② 초기의 원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 ③ 제조과정(정제포함) 중에 사용된 시약
- ④ 부산물

1) 어떤 물질 중에서 주성분인 순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백분율로 나타낸다.



다만 특정용도에 적합하도록 의도적으로 남겨 놓은 경우에는 불순물로 간주하지 않고 혼합물이나 조제품으로 보아 제30류 내지 제38류에 분류하거나 용도에 따라 특정 류(예 : 사료용은 제23류)에 분류한다.

물론 아래 [표 1]과 같이 순도에 따라 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표 1] 순도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지는 물품

번호	물품명	순도 조건
1	붕산	붕산의 함유량(건조중량 기준)이 85% 이하: 제2528호 붕산의 함유량(건조중량 기준)이 85% 초과: 제2810호
2	글리세롤	글리세롤의 순도 95% 미만: 제1520호 글리세롤의 순도 95% 이상: 제2905호
3	페놀	페놀의 순도 90% 미만: 제2707호 페놀의 순도 90% 이상: 제2907호
4	항생물질	항생물질 함유량(건조중량 기준)이 70% 이하: 제3824호 항생물질 함유량(건조중량 기준)이 70% 초과: 제2941호

### 가. 불순물이 80% 이상 제거된 경우

일반적으로 황산이나트륨(제2830호)은 순도가 90% 내지 99%인데 바꿔 말하면 불순물이 10% 내지 1%가 함유되었다고 가정할 때에 순도가 90%인 황산이나트륨을 순도가 96%인 황산이나트륨으로 정제했다면 이 경우에는 불순물이 60% 제거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념할 사항은 비록 불순물이 80% 이상 제거되지 않았더라도 앞의 [표 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세번변경이 발생할 정도로 불순물을 제거한 경우이거나 다음에서 설명하는 8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된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물품이 된 경우

#### (1) 의약품, 의료용, 화장용품,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예를 들면, 삼산화비소( $As_2O_3$ , 제2811호)에는 황화비소·황·산화안티몬 등의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부병이나 천식치료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황산이나트륨( $Na_2SO_4$ , 제2830호)은 순도가 90% 내지 99%인데 설사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각 불순물을 제거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천연 파프리카 추출색소(제3203호)가 식용 물질(food grade substance)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인 이소프로필알코올(50ppm 이하)과 핵산(25ppm 이하)이 일정 함유량 이하이어야 하므로 이 규정에 맞도록 불순물을 제거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 규칙을 적용할 때에 국제적으로나 양 당사국에서 사용하는 관련 법규나 규정집에서 불순물의 한계치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맞도록 불순물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킨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이러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불순물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킨 것이어야 한다. 특히 시약은 병원·제조업·현장 어떠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의학용·수의학용·과학용·산업실험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시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즉, 물품의 구성·레이블·실험실이나 이화학용이라는 설명서, 수행될 수 있는 특정 진단 시험의 표기, 물리적 형태(뒤편보강이나 지지된 모양으로 제시) 등에 의해 규명되어야 한다.

앞의 1-3-1(FTA 무역리포트 2014년,12월 참조)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물이나 용제에 용해한 것이라도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시약인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한다.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예를 들면 화분용 토양과 같은 식물 성장매체로 사용되는 혼합물(제3824호)은 어드(earth)·모래·점토로 구성되어 있는데, 질소·인·칼슘과 같은 비료요소를 소량 함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목적에 사용하려고 불순물로서 미량요소인 구성요소나 성분을 남겨 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한다. 참고적으로 식물의 미량원소는 구리·붕소·아연·망간·몰리브덴 등이며, 동물에서는 망간·요오드·코발트 등이다. 토양에 식물의 미량원소가 없으면 식물이 결핍증을 일으키게 된다.



- (4) **특수광학용** 이러한 용도에 사용하는 물질로서 특히 알칼리나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예 : 플루오르화리튬·플루오르화칼슘·브롬화칼슘·브롬요오드화칼슘)이 해당된다. 따라서 특수광학용에 적합하도록 불순물을 제거한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한다.
- (5) **건강과 안정을 위한 무독성용** 예를 들면, 인간의 건강과 안정에 유해가 되는 중금속인 비소나 납 또는 항생물질 등을 제거하여 무독성용으로 만든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한다.
- (6) **생명공학용** 생명공학용에 적합하도록 면역혈청이나 백신의 순도를 높인 경우 또는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한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한다.
-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캐리어(carrier)란 매개체 또는 운반체라 할 수 있는데 기본물질의 역할을 도와주는 물질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용도에 사용되는 캐리어에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물질의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한다. 예를 들면 항생제나 백신의 배양물질에서 항생제나 백신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캐리어이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규칙6의 이성체의 분리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8) **핵등급용** 이와 같은 경우는 제2844호의 방사성원소나 방사성동위원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위원소란 원자번호는 동일하나 질량수가 다른 원자핵종의 원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원자번호 92인 우라늄은 질량수가 227부터 240까지의 여러 핵종이 있다. 이들은 동위원소의 방사능정도에 따라 두께가 다르고 보통 납으로 된 내방사성 외부용기에 포장된다. 특정 국제협정에 따라 그 용기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정 방사성의 정도를 명시한 레이블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칙에 따라 핵등급에 적합하도록 공정을 거친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한다.

**규칙 3 혼합 및 배합(Mixture and Blends)**

제30류, 제31류, 제33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제38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 되는 혼합이나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이나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이거나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sup>2)</sup>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28류와 제29류는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순수한 물품이 분류되므로 다른 물질을 혼합하거나 배합한 경우에는 호의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품목별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2936호의 프로비타민이나 비타민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다른 물질을 혼합하거나 배합하였다도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상품의 목적이나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산지상품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제32류의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잉크와 같은 물품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플라스틱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것으로서 이 용제의 함유량이 50%를 초과할 때에는 제3208호에 분류하는데, 여기에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된 상태에서 착색제를 첨가했다라도 같은 호에 분류될 뿐만 아니라 이 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조제세제나 조제청정제(제3402호)에 보조성분인 표백제·정전 방지제·향료·살균제·효소를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된 상태로 혼합하거나 배합했다라도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제세제나 조제청정제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된 것이 아니므로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식물성 기름이나 광물성 오일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절삭유(제3403호)에 계면활성제를 혼합하였다라도 앞의 조제세제나 조제청정제와 같은 이유로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2) 원문은 "a good having different essential physical or chemical characteristics"인데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물리적이거나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번역하면 의미 전달이 명확할 것 같다. 이하 규칙도 이와 같다.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같이 이 규칙을 적용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우선,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된 혼합 또는 배합이어야 하고, 둘째는 그 결과로 얻어진 상품이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공정은 품질의 표준화를 위하여 관리되므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두 번째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고,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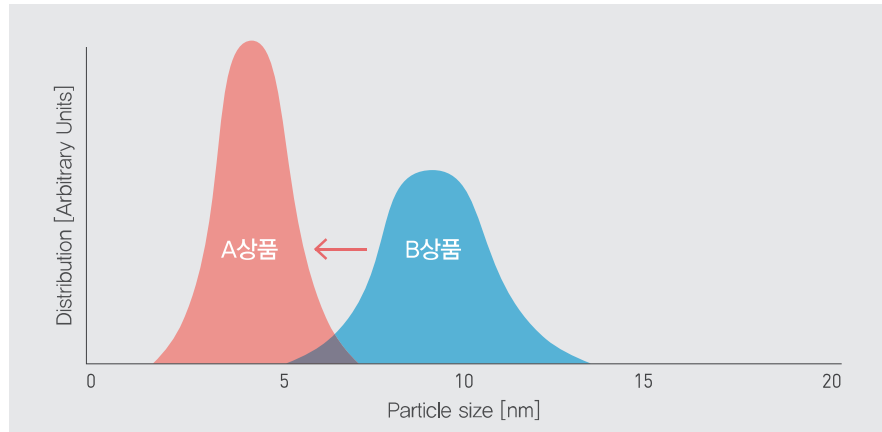
#### 규칙 4 입자크기의 변화(Change in particle size)

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중합제 용해와 그 후에 침전에 의해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나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어느 한 쪽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크기, 정의된 입자크기의 분포나 정해진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이 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

이 규칙4는 제30류, 제31류, 제33류의 물품에만 적용된다. 의약품이나 비료용 또는 화장품과 같은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 흡수력이나 침투력 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입자 크기를 변화시킨 것이다.

이 경우에도 앞의 규칙3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입자크기의 변화의 결과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이나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이 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제6부의 상품은 입자 크기가 변화되었다하여, 세번 변경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의약품 가루를 알약(정제, tablet)으로 만든 것은 원산지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림 1] 입자크기의 변화



주 : 이 그래프는 입자분석기에서 확인한 입자크기의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숫자[나노메타(nm)]가 커질수록 입자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칙에 따라 분쇄공정을 통하여 B의 입자분포도를 가진 상품을 A의 입자분포도를 가진 상품으로 가공한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 규칙 5 표준물질(Standards Materials)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표준물질의 생산이 어느 한 쪽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이 규칙의 목적상 “표준물질”(표준용액을 포함한다)은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용·검정용이나 참조용에 적합한 조제품을 말한다.

이 규칙5에서 규정한 표준물질의 적용과 관련하여 HS 품목분류표 제38류 주 제2호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주 규정에 따르면, 「제3822호에서 “보증된 참조물질(certificated reference materials)”이란 보증된 특성치, 이런 값을 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 각각의 값과 관련한 정확도가 나타나 있는 보증서가 첨부된 참조물질로서 분석용·측정용<sup>3)</sup>·참조용 등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3) 측정(calibrating)은 이 규칙의 ‘검정’과 같은 의미이다.



제28류나 제29류의 물품을 제외하면 보증된 참조물질은 분류하는 데는 제3822호가 이 표상의 다른 어떤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두 규정은 분석용, 검정용 또는 참조용에 적합하도록 보증된 정확한 순도나 비율을 가진 것은 동일하나, 두 규정의 차이가 있다면 한-미 FTA협정에서는 우선 제28류와 제29류 물품에도 적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증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HS 품목분류표에서는 보증된 참조물질에 해당되면, 제28류와 제29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3822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표준물질로 만든 경우에 호의 변경이 발생하면 이 규칙5를 적용할 필요가 없으나, 호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거나 제28류와 제29류의 상품에는 이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앞의 규칙1(화학반응 원산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물이나 용제에 용해한 용액이 이 규칙5에서 정한 표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한다.

실무에서 표준물질인지 여부의 확인이나 입증은 시약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표준물질로서 분석용·검정용이나 참조용에 사용한다는 레이블이나 설명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 규칙 6 이성체의 분리(Isomer Sepa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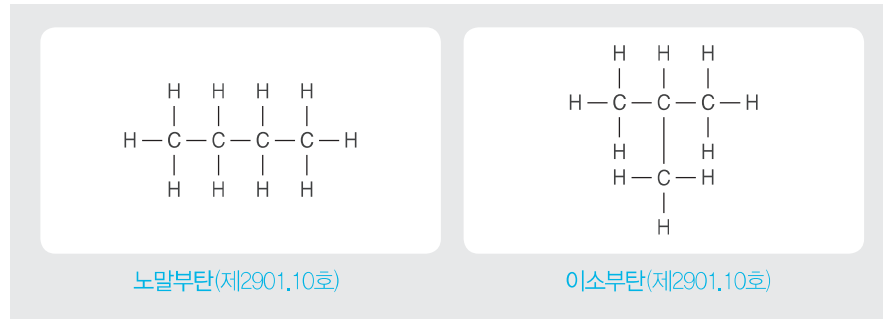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나 분리가 어느 한 쪽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

이성체란 분자식은 같으나 물리적이거나 화학적 성질이 다른 화합물을 말하며, 이러한 형상은 분자 내에서 원자의 배열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성체는 크게 구조이성체와 입체(광학)이성체로 나눈다.

(1)  
구조이성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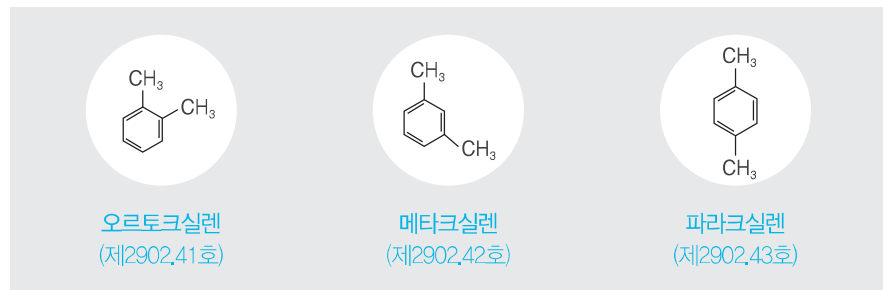
부탄의 구조이성체인 노말부탄과 이소부탄은 분자식은  $C_4H_{10}$ 으로 같으나 아래 그림과 같이 원자의 배열방식이 구조적으로 다르다. 물론 이들은 모두 같은 호에 분류된다. 다만, 품목분류의 관점에서 보면 제29류 주 제1호나목에 따라 포화나 불포화의 비환식 탄화수소의 입체이성체외의 이성체의 혼합물은 제27류에 분류되기 때문에 제27류에 분류되는 이성체의 혼합물을 분리하여 각각 제2901호의 상품을 얻었다면 품목분류의 변경이 발생되어 품목별기준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 규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림 2] 구조이성체인 노말부탄과 이소부탄의 구조식



또한 크실렌(자일렌)의 구조이성체인 오르토크실렌·메타크실렌·파라크실렌도 분자식은  $C_6H_4(CH_3)_2$ 로 같으나 원자의 배열방식이 구조적으로 다르다. [그림 3]에서 좌측부터 오르토크실렌·메타크실렌·파라크실렌이라 한다. 이들은 [그림 3]에 표시된 것과 같이 호가 모두 같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혼합물도 제2902호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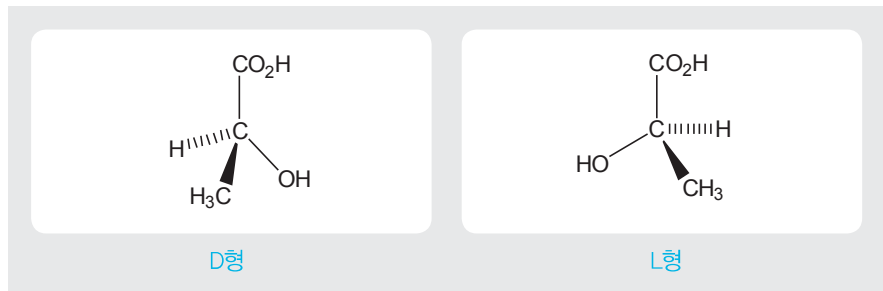
[그림 3] 구조이성체인 오르토크실렌·메타크실렌·파라크실렌의 구조식



**(2)**  
**입체(광학)이성질체**

락트산(‘젖산’ 제2918호)은 좌측에서부터 D형·L형·DL형인 세 개의 입체(광학)이성질체가 존재한다. 분자식은  $\text{CH}_3\text{CHOHCOOH}$ 으로 모두 같다.

[그림 4] 락트산 입체이성질체



따라서 이들 이성체의 혼합물을 유리나 분리 공정을 통하여 각각 상품을 생산했다면 세번변경이 없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규칙 7 분리금지(Separation Prohibition)**

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어느 한 쪽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세번이 변경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유리된 물질이 어느 한 쪽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을 거치지 않았다면 원산지 물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 규칙7을 적용함에 있어 “화학반응”에 관하여는 규칙1에서 설명한 것을 참고하면 된다. 혼합이란 본래 물질의 물리적 성질이나 화학적 성질을 유지한 상태에서 서로 섞여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체 분리법·용해법·증류법·비중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의 종류나 공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제28류나 제29류는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순수한 것만 분류되므로 다른 물질을 혼합하거나 배합하게 되면, 용도에 따라 주로 제30류부터 제38류까지에 분류된다. 이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발생되어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품목별기준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면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페니실린과 스트렙토마이신(모두 항생체로 제2941호로 분류한다)을 인위적으로 혼합한 것은 제3003호나 제3004호에 분류하기 때문에 품목별기준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이 혼합물을 페니실린(제2941호)과 스트렙토마이신(제2941호)으로 각각 분리한 것이라면 이 규칙에 따라 원산지상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천연 혼합물을 분리한 것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화학반응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호의 변경이 발생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동물의 선이나 그 밖의 기관(예 : 뇌 척수 간 신장 비장 췌장 등)의 추출물(제3001호)에서 각각 아미노산(제2922호), 비타민(제2936호), 호르몬(제2937호)으로 분리하였다면, 호의 변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품목별기준에 따라 원산지상품이 된다.

그러나 호르몬의 천연 혼합물(제2937호), 글리코시드류와 그 유도체의 천연혼합물(제2938호)을 화학반응을 거치지 않고 분리만 하였다면 분리된 호르몬과 글리코시드류도 동일하게 제2937호와 제2938호에 분류하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